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27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손지현

변론 종결2024. 8. 28.

판결 선고2024. 10. 3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기기 등의 도·소매업, 설치 및 유지보수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지스테크'라는 상호로 CCTV, POS, 신용카드, 컴퓨터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대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 [별첨1] 품목의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원고, 이하 같다)이 C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행하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 일부, 이에 수반한 부대용역 제공업무를 '을'(피고, 이하 같다)이 대행함에 있어 갑과 을 간의 지원사항과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출고물품내용)

별첨 1 참조

제3조(을의 의무)

물품대금 계약금 일금 오백만원 2015년 6월 31.일에 입금한다.

물품대금에 대한 잔금 일금 천육백구십오만원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분할상환한다.

제4조(위약금 및 손해배상 의무)

① 을이 [별첨1]의 판매대금을 지급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보증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변제 의무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물품대금 지불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물품판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 갑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은 증권 발행 후부터 적용된다.

[별첨1]

물품 출고 내용

1. 공급모델명

PC-1200	800,000	24	19,200,000	1,920,000	21,120,000
PC-1200(듀얼)	900,000	1	900,000	90,000	990,000

PC-1200	800,000	24	19,200,000	1,920,000	21,120,000
PC-1200(중고)	500,000	1	500,000	50,000	550,000
싸인패드	30,000	45	1,350,000	135,000	1,485,000
총합계			21,950,000	2,195,000	24,145,000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포스기, 기타 단말기 등의 물품을 가맹점에 판매·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원고와 관련 없는 C사에 매매하거나 원고의 C 서비스 구역 외의 점포에 설치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C 서비스 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현재까지 임차료와 C 서비스 수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신형 포스기 1세트의 월평균 임차료는 20,000원 상당이고, C 서비스 수수료는 회선 당 월 10,000원 상당인바, 2015. 6. 18.부터 2023. 6. 25.까지 약 102개월간 피고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76,500,000원[= 임차료 51,000,000원(= 20,000원 × 25대 × 102개월) + C 서비스 수수료 25,500,000원(= 10,000원 × 25대 × 102개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4,950,000원과 위 부당이득에서 가맹점의 신설, 해지, 소요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50% 감액한 38,250,000원(= 76,500,000원 × 50%) 합계 6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대금 24,145,000원[원고는 물품대금이 24,9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4,145,000원{= 물품대금 21,950,000원(= 5,000,000원 + 16,950,000원) + 부가가치세 2,195,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5,000,000원의 경우 2015. 6. 31., 나머지 16,950,000원의 경우 2015. 12.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23. 6. 27.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본 계약은 증권 발행 후부터 적용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아직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상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물품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증권의 제출기한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이 공급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계약이행보증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계약이행보증증권 미제출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진 급부인 물품 자체의 반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진 2015. 6. 18.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그때부터 5년이 되는 2020. 6. 18.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손해 및 이득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혜주